



# 사우스 저지 교통. 기획 조직

1993년부터 애틀랜틱, 케이프 메이, 컴벌랜드, 세일럼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17 E 랜디스 애비뉴, 2층  
빈랜드, 뉴저지 08360

[www.sjtpo.org](http://www.sjtpo.org)  
(856) 794-1941  
(856) 794-2549 (팩스)

## 미국 교통부(USDOT)

### 표준 Title VI/비차별 보증

### USDOT 주문 번호 1050.2A

사우스 저지 교통 계획 기구(이하 "수취인")는 미국 교통부(USDOT)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FHWA) 및 뉴저지 교통부(NJDOT), 의 적용을 받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동의합니다:

#### 법령/규제 당국

- 1964년 민권법 제6조 (42 U.S.C. § 2000d et seq., 78 stat. 252),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금지); 252),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출신 차별);
- 49 상업용 고속료 파트 21 (1964년 민권법 제6조 발효);
- 23상업용 고속료 파트 200 (제6차 프로그램 및 관련 법령 - 시행 및 검토 절차);
- USDOT 주문 1050.2 (표준 USDOT 타이틀 VI 보증);
- 28 상업용 고속료 섹션 50.3 (1964년 민권법 제6조 시행을 위한 미국 법무부 지침);
- 1970년 통일 이주 지원 및 부동산 취득 정책법(42 U.S.C. § 4601), (연방 또는 연방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인해 재산을 취득했거나 실향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함);
- 1973년 연방 보조 고속도로법 제162조(a)항, (23 U.S.C. § 324 et seq.),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1973년 재활법 제504조(29 U.S.C. § 794 등), 개정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그리고 49 C.F.R. 제27부;
- 1975년 개정된 연령 차별법(42 U.S.C. § 6101 et seq.),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
- 1982년 공항 및 항공기 개선법(49 U.S.C. § 471, 섹션 47123)은 인종, 신조,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987년 민권 회복법(PL 100-209), 1964년 민권법, 1975년 연령 차별법, 1973년 재활법

제504조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방 지원 수혜자, 하위 수혜자 및 계약자의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 미국 교통부 규정에 따라 49개의 C.F.R. 파트 37 및 38에서 시행된 공공 기관, 공공 및 민간 교통 시스템, 공공 숙박 시설 및 특정 시험 기관(42 U.S.C. § § 12131 - 12189)의 운영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장애인법 제2조 및 제3조;
- 연방항공청의 차별 금지 법령(49 U.S.C. § 47123)(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1972년 개정된 교육 개정안의 Title IX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 U.S.C. 1681 및 참조)

앞의 법정 인용문과 규제 인용문을 각각 "법"과 "규정"이라고 합니다.

### 일반 보증

법률, 규정 및 기타 관련 지침, 회람, 정책, 메모 및/또는 지침에 따라 수령인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미국 내 어떤 사람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미국 도로청(FHWA)을 포함한 USDOT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1987년 민권 회복법은 제목 VI 및 기타 차별 금지 요건(1975년 연령 차별법 및 1973년 재활법 제504조)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일부가 연방 지원을 받는 한 수혜자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을 포함하도록 이러한 비 - 차별 금지 법령의 광범위하고 제도적인 범위와 범위를 복원함으로써 의회의 원래 의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 특정 보증

보다 구체적으로, 위의 일반 보증에 제한 없이 수령인은 연방 지원 USDOT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증에 동의하고 제공합니다.

1. 수령인은 49 C.F.R. § 21의 § § 21.23 (b) 및 21.23 (e)에 정의된 각 "활동",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촉진되거나 ("시설"과 관련하여) 운영되거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법령 및 규정에 의해 부과된 모든 요건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여 수행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2. 수령인은 모든 입찰 요청, 작업 제안 요청 또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법령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료와 자금 출처에 관계없이 조정된 형태로 협상된 모든

제안서에 다음과 같은 통지를 삽입합니다:

*1964년 민권법 제6조 규정에 따른 사우스 저지 교통 계획 기구 (78 통계). 252, 42 U.S.C. § § 2000d에서 2000d-4) 및 규정에 따라 모든 입찰자에게 이 광고에 따라 체결된 계약, 불리한 사업체는 이 초대에 응하여 입찰을 제출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수상을 고려하여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임을 긍정적으로 통지합니다*

3. § § 2000d에서 2000d-4) 및 규정에 따라 모든 입찰자에게 이 광고에 따라 체결된 계약, 불리한 사업체는 이 초대에 응하여 입찰을 제출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수상을 고려하여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임을 긍정적으로 통지합니다
4. 수령인은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계약 또는 계약에 본 보증의 부록 A 및 E 조항을 삽입합니다.
5. 수령인은 이 보증서의 부록 B 조항을 토지와 관련된 계약으로 미국의 부동산, 구조물, 용도 또는 개선 사항을 수령인에게 양도하거나 기록하는 모든 증서에 삽입할 것입니다.
6. 수혜자가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를 건설하기 위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보증은 이와 관련하여 운영되는 전체 시설 및 시설로 확장됩니다.
7. 수령인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거나 부동산 취득 또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보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간, 위 또는 아래에 대한 권리로 확장됩니다.
  - a. 수령인은 이 보증서의 부록 C 및 부록 D에 명시된 조항을 토지와 관련된 계약으로 향후 수령인이 다른 당사자와 체결한 모든 행위, 임대, 라이선스, 허가 또는 유사한 문서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 b. 해당 활동,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하거나 개선된 부동산의 건설, 사용 또는 접근을 위해.
8. 이 보증은 연방 재정 지원이 프로그램에 확장되는 기간 동안 수혜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단, 연방 재정 지원이 개인 재산 또는 부동산, 이자 또는 이에 대한 구조나 개선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보증은 수혜자 또는 양수인에게 다음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의무를 부과합니다:
  - a. 연방 재정 지원이 연장되는 목적이나 유사한 서비스 또는 혜택 제공과 관련된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이 사용되는 기간; 또는
  - b. 수령인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보유하는 기간.

9. 수령인은 교통부 장관 또는 특정 권한을 위임하는 공무원이 발견한 프로그램의 관리 방법을 제공하여 해당 프로그램, 기타 수령인, 하위 수령인, 하위 수혜자, 하청업체, 하청업체, 컨설턴트, 양수인, 관심 있는 승계인 및 기타 연방 재정 지원 참여자들이 법률, 규정 및 이 보증에 따라 부과된 모든 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할 것입니다.
10. 수령인은 미국이 법률, 규정 및 본 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사법적 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이 보증서에 서명함으로써, **남부 저지 교통 계획 기구**는 또한 기록, 계정, 문서, 정보, 시설 및 직원에 대한 **FHWA** 및 **NJDOT** 접근을 규제하는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및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는 **FHWA** 및 **NJDOT**에서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규정 준수 검토, 그리고/또는 불만 조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청 시 기록, 보고서를 보관하고 검토 자료를 신속하고 완전하며 정확한 방식으로 **FHWA**와 **NJDOT** 또는 지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 시 기록, 보고서를 보관하고 검토 자료를 신속하고 완전하며 정확한 방식으로 **FHWA**와 **NJDOT** 또는 지정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우스 저지 교통 계획 기구**는 미국 교통부의 **USDOT** 프로그램에 따라 수령자에게 연방 보조금, 대출, 계약, 계약, 재산 및/또는 할인, 또는 기타 연방 원조 및 연방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이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보증은 뉴저지 주, 기타 수혜자, 하위 수혜자, 하위 수혜자, 하위 수혜자, 계약자, 하청업체 및 그들의 하청업체, 양수인, 관심 있는 후계자 및 모든 **USDOT 프로그램**의 기타 참가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아래 서명하는 사람은 수령인을 대신하여 이 보증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우스 저지 교통 계획 기구 (수신자)**

기준: \_\_\_\_\_

공인된 공무원의 서명

날짜: 2026년 5월 12일

## 부록 A

이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계약자 자신, 그 양수인 및 이해관계가 있는 승계인(이하 "계약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1. **규정 준수:** 계약자(이하 컨설턴트 포함)는 미국 연방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의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서 비차별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이는 참고용으로 포함되며 본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 계약자는 계약 중 수행한 작업과 관련하여 자재 조달 및 장비 임대를 포함하여 하청업체의 선택 및 유지에 있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49 CFR Part 21의 부록 B에 명시된 활동,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때 고용 관행을 포함하여 법령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3. **자재 및 장비 조달을 포함한 하도급 계약 요청:** 경쟁 입찰이나 자재 조달, 장비 임대 등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될 작업에 대한 계약자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요청에 대해, 각 잠재적인 하도급업체 또는 공급업체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계약자의 의무와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4. **정보 및 보고서:** 계약자는 법률, 규정 및 이에 따라 발행된 지침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보고서를 제공하며, 수령인 또는 **연방도로청**이 해당 법률, 규정 및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부, 기록, 계정, 기타 정보 출처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입니다. 계약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보 제공에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다른 사람의 전유물인 경우, 계약자는 수령인 또는 **연방도로청**에 적절하게 인증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합니다.
5. **불이행에 대한 제재:** 계약자가 본 계약의 비 차별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취인은 해당 계약 제재를 부과하거나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a. 계약자가 준수할 때까지 계약에 따라 계약자에게 지급을 보류하는 것; 그리고/또는
  - b.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종료 또는 중단하는 것.
6. **조항의 통합:** 계약자는 법률, 규정 및 지침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자재 조달 및 장비 임대를 포함하여 모든 하도급 계약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할 것입니다. 계약자는 수취인 또는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해당 조항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지시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 계약 또는 조달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단, 계약자가 그러한 지시로 인해 하청업체 또는 공급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 계약자는 수령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령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 소송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록 B

### 미국 재산 양도 증서 조항

다음 조항들은 보증 4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구조물 또는 개선물의 양도를 효력 있게 하거나 기록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이자를 부여하는 문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교통부는 법적으로 승인된 대로 사우스 저지 교통 계획 기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수락하고 N.J.S.A.에 따라 건설된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토지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27:7-21(a), USDOT 프로그램 관리 규정 및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이 정한 정책과 절차는 1964년 민권법 제6조 조항과 관련하여 연방 규정 제49조, 연방 규정 강령, 미국 교통부, 부제 A, 비서실, 파트 21,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78 Stat. 252; 42 U.C. § 2000d ~ 2000d-4)는 여기에 첨부된 전시 A에 명시된 해당 토지에 대한 미국 교통부의 권리, 소유권 및 이해관계를 수정, 해제, 철회하고 사우스저지 교통 계획 기구에 전달합니다.

#### (하벤덤 조항)

해당 토지와 이익을 사우스저지 교통계획기구와 그 후계자에게 영원히 보유하려면, 그러나 여기에 포함된 규약, 조건, 제한 및 유보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이는 연방 재정 지원이 연장되는 목적이나 유사한 서비스 또는 혜택 제공과 관련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사우스저지 교통계획기구, 그 후계자 및 양수인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사우스저지 교통계획기구는 해당 토지의 양도와 토지 내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자신과 그 후계자들을 위해 토지를 운영하는 계약으로 체결하고 합의하며, (1)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누구도 해당 토지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한 시설에 대해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할당합니다. (2) 사우스저지 교통계획기구는 미국 연방 규정 제49조, 연방 규정 제49조, 미국 교통부, 부제 A, 비서실, 파트 21, 연방 보조 프로그램에서의 비차별, 1964년 민권법 제6조 및 규정 및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비차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해당 토지 및 시설에 출입하거나 재입식할 권리가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토지 및 시설은 해당 토지에 다시 출입하거나 재입식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토지 및 시설은 해당 토지에 귀속되어 이 지침 이전에 존재했던 미국 교통부 및 그 할당의 절대 재산이 될 것입니다.\*.

\*리버스터 조항 및 관련 언어는 Title VI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됩니다.

## 부록 C

### 활동,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하거나 개선된 부동산 양도 조항

다음 조항은 보증 7(a)의 규정에 따라 *사우스저지 교통 계획 기구*가 체결한 문서, 라이선스, 임대, 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에 포함됩니다:

- A. 본인, 상속인, 개인 대리인, 이해관계 있는 상속인 등을 위해 적절한 경우 (부여인, 임차인, 허가인 등), 그리고 여기서 고려하는 사항의 일환으로 [행위 및 임대차의 경우 '토지와 함께 운영되는 계약'으로서]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합니다:
  - 1. 미국 교통부의 활동, 시설 또는 프로그램이 연장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에 설명된 재산(허가, 면허, 임대, 허가 등)에 따라 시설이 건설, 유지 또는 운영되는 경우, (허가권자, 면허권자, 임차인, 허가권자 등)은 법률 및 규정에 의해 부과된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 해당 시설 및 서비스를 유지 및 운영하며,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하는 사람이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부하거나 해당 시설의 사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B. 면허, 임대차, 허가 등과 관련하여, 위의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남부 뉴저지 교통 계획 기구는 해당 토지와 시설을 임대, 면허, 허가 등으로 종료하고, 해당 토지와 시설에 출입, 재입주 및 재점유할 권리를 가지며, (임대, 면허, 허가 등)가 한 번도 이루어지거나 발급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C. 증서와 관련하여, 위의 차별 금지 규약을 위반할 경우, 사우스 저지 교통 계획 기관은 해당 토지와 시설에 출입하거나 재입사할 권리를 갖게 되며, 위에서 설명한 토지와 시설은 반환되어 투자되며, 이는 사우스 저지 교통 계획 기관과 그 할당자의 절대 재산이 됩니다.\*.

\*해당 조항이 Title VI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되는 복귀권 조항 및 관련 언어.

## 부록 D

### 활동,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건설/사용/접근에 관한 조항

다음 조항은 보증 7(b)의 규정에 따라 남저지 교통계획기구가 체결한 증서, 면허, 허가 또는 유사한 문서/협약에 포함됩니다

- A. 본인, 상속인, 개인 대표자, 이해관계가 있는 후계자 등을 위해 (적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고려의 일환으로 (1) 인종, 피부색 또는 국가 기원의 어떠한 사람도 해당 시설의 사용에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부인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음을 (2) 인종, 피부색 또는 국가 기원의 어떠한 사람도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부인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음을 (3) 본 보증서에 명시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른 모든 요건을 준수하여 (3) 본 보증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시설의 사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 B. (라이선스, 리스, 허가 등)에 관하여, 위의 **비 차별 규정을 위반할 경우, 남부 뉴저지 교통 계획 기구는** 해당 토지와 그 시설에 출입하거나 재점유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토지(라이선스, 허가 등)가 작성되거나 발급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C. 행위와 관련하여, **위의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사우스 저지 교통 계획 기관은** 즉시 해당 기관으로 복귀하여 이에 투자하고 **사우스 저지 교통 계획**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절대 재산이 됩니다.\*.

\*해당 조항이 Title VI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사용되는 리버터 조항 및 관련 언어.

## 부록 E

이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계약자 자신, 그 양수인 및 이해관계 있는 승계인(이하 "계약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차별 금지 법령 및 권한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관련 비차별 당국:

- 1964년 민권법 제6조 (42 U.S.C. § 2000d 이하 참조, 78 통계.), 252),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금지), 그리고 49 C.F.R Part 21;
- 1970년 통일 이주 지원 및 부동산 취득 정책법(42 U.S.C. § 4601), (연방 또는 연방 원조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로 인해 재산을 취득했거나 실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금지함);
- 1973년 연방 보조 고속도로법(23 U.S.C. § 324 및 기타 등등*et seq.*),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1973년 재활법 제504조(29 U.S.C. § 794 등), 개정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그리고 49 C.F.R. 제27부;
- 1975년 개정된 연령 차별법(42 U.S.C. § 6101 및 등등.),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
- 1975년 개정된 연령 차별법(42 U.S.C. § 6101 et seq.),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
- 1982년 공항 및 항공기 개선법(49 U.S.C. § 471, 섹션 47123)은 인종, 신조,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987년 민권 회복법(PL 100-209), 1964년 민권법, 1975년 연령 차별법, 1973년 재활법 제504조의 적용 범위, 범위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방 지원 수혜자, 하위 수혜자 및 계약자의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 미국 교통부 규정에 따라 49개의 C.F.R. 파트 37 및 38에서 시행된 공공 기관, 공공 및 민간 교통 시스템, 공공 숙박 시설 및 특정 시험 기관(42 U.S.C. § § 12131 - 12189)의 운영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장애인법 제2조 및 제3조;
- 연방항공청의 차별 금지 법령(49 U.S.C. § 47123)(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행정명령 13166호,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그에 따른 기관 지침, 국적 차별에는 제한된 영어 능력(LEP)으로 인한 차별이 포함됩니다. 등록 74087에서 74100);
- 1972년 개정된 교육 개정안의 Title IX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 U.S.C. 1681 *et seq.*)